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곽재성(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Ⅰ. 들어가며
Ⅱ. 남미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
Ⅲ. 과거청산의 국제화 과정
Ⅳ. 보편적 관할권과 그 효과
Ⅴ. 결론

I. 들어가면서

본 논문의 목적은 '피노체트 사건'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과거 청산의 국제화 과정에서 핵심의제로 부상한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1973년의 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하며 인권탄압을 자행한 독재자 피노체트는 1998년 런던의 한 병원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온 피노체트가 체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페인 법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피노체트가 영국행 비행기를 타기 2년 전, 스페인 최고형사법원(Audiencia Nacional)의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Jae Sung Kwak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kwakwak@unitel.co.kr) "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Effect of Universal Jurisdiction: a study on 'caso Pinochet'"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수사판사인 카를로스 가르시아-카스테욘(Carlos García-Castellón)은 스페인 사법 당국이 국외에서 일어난 집단살해, 테러, 고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내었다.[1] 그는 스페인 법원에 아르헨티나 군부와 칠레의 피노체트를 기소하였고, 수백 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마드리드의 법정에서 과거의 인권탄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남겼다. 가톨릭교회가 수집한 독재시대 17년간의 각종 문서도 공개되었다.

1998년 피노체트가 신병치료차 영국에 도착하자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Baltazar Garzón)가 사건을 맡아 마드리드에서 즉각 영장을 발부했고, 이를 전해 받은 영국 경찰은 이를 이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피노체트 체포가 단행되었다. 가르손은 영국과 스페인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과 유럽테러협약에 의거해 피노체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고, 영국법원은 1년 반 동안이나 피노체트를 가택 연금시키며 이 사건을 심리하여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국 상원의 재판부는 11월 25일 피노체트가 집권기간 중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의 면책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 인도할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지만, 영국정부는 치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그를 칠레로 돌려보냈다.

이와 같은 '피노체트 사건(caso Pinochet)'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시켰다. 어떤 의미에서 피노체트가 석방됨으로써 결과 없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동안 각국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피노체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익을 인권보다 중요시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막혀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피노체트 억류 사건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니었다. 앞으로

1)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우리의 검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 즉 우리의 검찰 기능이 수사판사와 검사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수사판사의 권한이 막강하다. 한국의 검찰이 행정부 소속(법무부)인데 반해 스페인은 수사기능까지 포함하는 판사제도를 사법부 안에 두고 있고 검사 역시 사법부 소속이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각국의 독재자들은 재임 중 인권유린 등 반 인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재판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국의 국내 법원이 전직 국가원수가 저지른 국제적인 인권범죄에 대해 초국적 사법권을 행사한 이 최초의 사례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종이 선언'에 머물러 있던 인권이 한 단계 더 진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적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피노체트 억류 사건은 그러나 가르손 판사의 논리와 피노체트 사건의 배경과 결과를 둘러싼 논쟁, 특히, 국제적 성격에 대해선 극히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 주된 이유는 학술연구의 영역에서든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든 '인권법의 영웅'인 가르손의 기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Rothenberg 2002, 9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피노체트 사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Wilson(1999)의 논문은 사건의 과정과 배경을 스페인의 법체계에 맞추어 상세히 서술한 것으로 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바탕을 제공한다. Rothenberg(2002, 925)는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서술하면서 가르손 판사와의 자세한 인터뷰를 근거로 그의 비전을 분석하였고, Evans(2006)는 피노체트 사건이라는 국제적 효과에 대해 칠레의 국내정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분석했다. 반면 Kaminga(2001)는 이번 사건의 쟁점중의 하나인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해설을 시도했다. Rojas외(2001)는 피노체트 사건에 대해 미주 각국의 시각을 담은 귀중한 저술로서 본 사건으로 얽힌 국가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남미의 인권 침해와 과거 청산을 다룬 국내의 논문이 비교적 풍부하고(곽재성 1998; 박병수 2002; 강경희 2006 외),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지원사업으로 각국의 과거청산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수행(기억과 전망, 2002년)된 것에 반해, '피노체트 사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예외가 있다면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서술한 정영숙(2001)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칠레와 시에라 레온 등의 사례를 통해 사면권의 박탈, 즉 인권유린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한 김영석(2005) 정도이다.

과거 청산의 국제화에 대한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은 '피노체트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우선 다음 Ⅱ장에서는 배경제시를 위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남미 과거 청산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언뜻 보면 이 사건은 칠레의 사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페인을 비롯한 제3국으로 과거 청산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사례를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두 국가에 있어 과거 청산의 국내적인 실패 경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피노체트' 사건에 있어서 과거청산의 국제화 과정을 여러 행위자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며, Ⅳ장에서는 본 사건의 핵심 근거인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를 법과 정치의 갈등, '정의확립' 개념의 정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와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

Ⅱ. 남미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

남미 국가 중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전혀 다른 민주화과정을 거쳤음에도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권위주의 붕괴유형에 따라 분류하자면 아르헨티나는 '와해(collapse)'이고 칠레는 '타협(transaction)'에 속한다. (박병수 2002, 83) 이러한 분류는 자연스럽게 와해를 통한 민주화가 과거청산이 용이한 반면 타협을 통한 민주화는 과거청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해 낸다. 즉, 와해를 통한 민주화의 경우 기존 권위주의 체제가 통제력을 상실해 스스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로 퇴각하기 때문에 민간정부의 과거청산이 용이하며, 타협의 경우 군부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청산이 어렵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타협'으로 분류되는 칠레의 경우 군부의 후견 하에 민주화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견고한 안전정치와 군부의 힘이라는 장벽에 막혀 과거 청산작업은 민주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런데 군부가 '와해'된 아르헨티나에서도 과거 청산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부가 몰락하여 독재시절 인권침해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여전한 군부의 위협과 메넴 등 민간 정권의 의지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양국의 과거 청산은 국내에서 자율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국제화 과정을 거쳐 후일 다시 국내에서 청산이 시도되는 공통된 모습을 보였다. 이 장에서는 우선 국제화 이전인 1998년까지 양국의 과거 청산 작업과 그 한계를 짚어보도록 한다.

Ⅱ.1. 칠레의 사례

피노체트는 자신의 재임여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1988년의 국민투표에서 패하자 다음 해의 대통령 선거를 약속대로 실시하였고 중도좌파의 연합 후보였던 아일윈이 군부와 우파를 대표했던 비시(Büshi)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이자 독재 정권의 패배였지만 군부의 입장에선 엄연한 양보였다.

즉, 군부의 위상이 여전히 막강했고 민주화 이행 방식이 보호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노체트에 대한 처벌이 국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권 문제의 해결은 진실 규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칠레의 경우 보호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 바탕은 민간에 대한 군부의 우위 지속, 미래의 진실규명 작업에 대비한 군부의 안전장치 마련이었다.

첫째, 최초의 안전장치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군사평의회(Junta)는 장래에 군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1973년부터 1978년의 기간 동안 군부가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포괄적인 사면법(blanket amnesty)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인권 탄압이 가장 심했던 이 기간 동안의 범죄는 법적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인 처벌이 불가능했다.

둘째, 법적인 안전망에 더하여 정치적으로 군부가 선택한 안전장치는 우파를 제도권의 강력한 대항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상원의원 임명제를 도입하여 정족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원의원을 피노체트가 임명하였고,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법제화시켜 우파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여 하원에서의 발언권을 제고시켰다. 이는 전체 의석의 반 정도를 중도좌파 집권연합이 차지한다는 가정 하에 우파가 개헌저지선인 3분의 1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치밀한 전략이었다.

셋째, 군부의 우위와 실질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1980년의 헌법과 1989년의 국군조직법을 통해 어떠한 후임자든 군부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군부가 국가안전보장위원회(Consejo Seguridad Nacional: CSN)를 통해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육, 해, 공군과 경찰군(Carabineros)의 수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제안했다. 이는 곧 헌법상 피노체트가 군 통수권자로 남아있는 1998년까지 피노체트는 군부를 통해, 그 군부는 각종 제도와 정치권을 통해 민간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군부에 도전하는 권력 행사를 제안하고자 하는 포석에서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1989년의 국군조직법은 미래의 국방예산이 1989년도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을 금지했고 국영동광회사(CODELCO) 순이익의 10퍼센트를 매년 국방 예산으로 전용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군부의 풍부한 재정 확보를 통해 진정한 우월권을 공고화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조치이다. 이상과 같은 모든 안전장치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헌법이었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우파의 의회 진출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은 불가능했다.(곽재성 1998, 24-6)

넷째, 피노체트 자신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도 잊지 않았다. 퇴임 직전의 개헌을 통해 1998년 3월까지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1998년 3월 이후에는 면책특권을 갖는 종신상원의원으로 자신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의 신분을 보장하였다. 정권은 넘겼지만 그는 여전히 군을 통솔하는 막강한 권력의 핵심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자신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면책특권을 미리 부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법제도적 안전장치에 더하여 피노체트가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비밀경찰을 통해서 작성해 놓은 정치인, 법조인들에 관한 비밀 개인 파일들이다. 그는 자신과 군의 위상에 위협을 느낄 때마다 본 파일의 존재를 암시하여 민간 정치인들을 암암리에 협박해 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민주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뚫고 과거 청산을 시도한다. 1988년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피노체트가 패하자 기독교민주당(DC)과 사회당(PSCh)을 위시한 중도, 좌파 정당의 연합체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은 힘을 얻었고 이듬해의 대통령 선거 실시 이전에 민주화 개혁에 관한 대 군부 협상에 돌입했다. 주요 골자는 상원의원의 수를 늘려 피노체트가 지명한 의원의 비율이 5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군인의 수가 절대다수를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동 회의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여 자문기구화 시킨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을 위한 정족수도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안전장치의 핵심은 군부의 뜻대로 보존되었다. 따라서 군부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에 민주화된 시점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나 (헌)법 개정, 그리고 집권 세력이 취할 수 있는 과거 청산과 민주화 정책이 여전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콘세르타시온은 1989년의 상원선거에서 22대 16으로 우파에게 승리하였지만 피노체트가 지명한 8명의 상원의원 탓에 오히려 상원에서 22대 24로 열세에 몰리게 되었다. (곽재성 1998, 25-6) 결국 헌법 개정은 우파의 힘이 지속되는 한 불가능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2005년 9월에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포된 새 '민주헌법'은 퇴역 군인과 경찰 수뇌부에게 할당됐던 4석을 포함해 임명직 상원의원 9개 의석을 없애는 등 독재시대의 독소조항을 모두 없앴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또한 아일윈 행정부는 군부의 권한 축소를 위해 노력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 피노체트 장군이 제청했던 군 고위 장성의 인사와 승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이며 이는 군 수뇌부의 구성에 대통령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아일윈 시절 가장 주목해야 할 활동은 1990년과 91년 동안 칠레를 흥분시켰던 레틱 위원회(Rettig Commission)[2]의 보고서이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는 인권 탄압의 원인들을 분석하였고, 개별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정보기관, 군, 사법부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권리회복의 차원에서 사망, 실종자의 가족에게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할 것도 명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보고서에 따라 인권 침해 사범을 기소하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아일윈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손에 들고 텔레비전에 출현해 가장 강조한 부분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용서와 화합'이였다. 관련자 처벌을 통한 '정의확립'에 있어 정부차원의 대처는 지극히 미비했다. 한 근거로 민주화 시기의 처음 5년 동안 단 한명의 군 고위장교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인권문제에 관한 재판이 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인권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이 군부의 눈치를 보느라 관련 군인들의 소환을 꺼렸기 때문이다. (곽재성 1998, 26-7)

아일윈의 뒤를 이어 1994년에 대통령에 오른 프레이는 칠레 역사상 가장 싱거운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무려 58퍼센트라는 전폭적 지지는 군부에 대한 민간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프레이 정부는 상원의원 임명제의 폐지와 국가안전보장회의(CSN)의 재구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1995년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레틱(Raúl Rettig)의 이름을 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리웠으며 정식명칭은 진실·화해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Verdad y Reconciliación)이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에 의회에 상정하였다. 여당은 군사정부와의 단절을 꾀하고 있던 중도 우파의 국가개혁당(Renovación Nacional: RN)과 손을 잡는데 성공하여 개헌안은 통과되는 듯 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를 존속시켜야 자신들에게 유리한 7명의 RN소속 의원들이 극우파인 민주독립연합(Unión Democrática Independiente: UDI)과 손을 잡는 바람에 개헌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개헌 실패는 역으로 우파를 결속시키는 결과를 낳아 그 이듬해에 다시 상정된 개헌안도 부결되었다. 이와 같이 아일윈과 프레이, 두 민간 정부는 군부의 제도적 유산을 타파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견고한 안전장치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보였고 따라서 과거청산작업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곽재성 1998, 26-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에서는 과거청산 노력은 있었지만 그 성과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고 몸통 격인 피노체트의 처벌은 요원해 보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1998년 런던에서의 피노체트 체포 사건은 칠레의 과거 청산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Ⅱ.2. 아르헨티나의 사례

비델라(Videla) 등이 주축이 된 아르헨티나의 군부는 1976년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 시대를 열었다. 그 후 1983년 12월 라울 알폰신(Alfonsin) 대통령의 민간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7년 동안 군사정권은 민간인에 대한 살해, 투옥, 고문, 강제추방 등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10,0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지만, 인권단체들은 30,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많은 지식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본의 아니게 국외로 망명을 떠났는데 약 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르는 아르헨티나 반 체재인사가 외국을 떠돌다가 일부는 도착지에서 정착을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망명지에서 죽거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그러던 중 아르헨티나의 군부는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와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에서의 참패로 인해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1983년 10월 선거에서 집권한 알폰신은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율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군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실종자 문제 처리와 인권 탄압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하였다. 취임 직후 알폰신은 군부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자동사면법을 폐기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실종자국가위원회(CONADEP)'를 설치하여 군부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저명한 지식인이자 작가인 사바토(Ernesto Sábato)가 위원장이었던 '실종자국가위원회'는 모든 사법기관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경찰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인권단체와 희생자 가족들의 자발적인 도움도 전국에서 답지하였다. (박병수 2002, 83)

이듬해 그 결과물로 발표된 보고서가 바로 '절대 다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지닌 '눈카마스(Nunca Más)'였는데 약 5만 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실종자 8,960명의 명단과 약 340곳의 비밀 지하 감옥 등 수용시설의 위치와 실상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다. 동시에 알폰신은 군부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임명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군부가 국내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했고 대통령이 총 사령관으로서 군부를 지휘 통솔하도록 했다. 또한 장군 정원을 60명에서 25명으로 축소했고, 고위급 장교들을 조기에 전역시키고 젊은 장교들을 중용하였다.(Panizza 1995, 172-3, 박병수 1998, 89에서 재인용)

무엇보다도 알폰신 정부의 가장 큰 공적은 상당한 난관을 뚫고 공개재판을 통해 9인의 군사정부 지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한 것이다. 1985년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전 대통령 비델라와 전 해군 참모총장 마세라(Masera)에게는 종신형을, 비올라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반면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알폰신 정권의 과거청산 노력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1986년 12월에 '60일 이내에 모든 군정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를 마무리한다'는 '기소중지법(Ley de Punto Final)'을 제정하였고, 1987년 6월에는 중하급 장교들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복종의무법(Ley de Obediencia Debida)'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에 따라 인권탄압 장교들에 대한 기소는 중지되었다. 동시에 군에 대한 처우개선을 시도하는 등 대 군부 타협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민주정부 초기의 강력한 인권 정책으로부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군부의 와해로 인해 과거청산이 쉬웠을 법한 아르헨티나에서 이러한 노력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야당인 정의당과 의회, 사법부 등 보수파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다. 대선과정에서 군부와 타협적인 태도를 보인 정의당은 알폰신의 과감한 인원문제 해결 방식이 오히려 군부를 자극, 재등장을 초래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관련자의 사법처리에 반대하였다. 정의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의회는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오직 군사법원에 귀속한다는 법을 제정하면서 인권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실종자국가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 재판에 회부된 9인의 군정지도자들에 대해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행스럽게 알폰신은 여론의 도움으로 연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관시켜 처리할 수 있었다.

둘째, 군부의 실질적 반발에 직면한 것인데, 그 원인은 알폰신의 적극적인 진실 규명 작업으로 2천명이 넘는 하급 장교들의 범행까지 드러나, 기소당할 위협을 느낀 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결정적으로 하급장교들이 주축이 된 군부 쿠데타 기도를 접하면서 알폰신 대통령은 물러서게 되었다. (박병수 2002, 90)

셋째, 경제 안정화 정책의 미흡한 성과 때문에 급속한 인플레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자 정치적 지지기반도 매우 약화되었다. 과거청산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한 문제점은 1989년에 들어선 카를로스 메넴 정권에 있었는데 그는 두 차례의 대규모 사면을 통해서 과거 인권유린의 책임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이 있는 군인들과 민주화 시대에 네 차례나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을 석방하여 그나마 성과 있었던 과거청산 작업을 스스로 종결지었다. 여전히 군부의 조직적인 반발과 쿠데타 위협 앞에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폰신과는 달리 메넴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청산의지가 결여된 정치인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양국의 과거 청산 작업은 민주화의 형태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스페인의 사법부가 활발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1998년에 피노체트가 체포되면서 과거 청산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Ⅲ. 과거청산의 국제화

Ⅲ.1. 가르손과 가르시아-카스테욘의 노력

인권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는 침해 사범에 대한 타국 인도나 국제적 공조수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가 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마약이나 테러 등의 사안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 협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법원에서 피노체트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영국이 이를 집행한 사건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에 있어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기회였고 그 이면에는 가르손 판사와 가르시아-카스테욘 판사의 노력이 있었다.

1996년부터 가르손은 아르헨티나의 '추악한 전쟁' 시기(1976-83)에 실종되었던 스페인 국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철저한 조사 활동을 거쳐 1997년에는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이자 군부 독재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비록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은 과거의 독재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체포될 수도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있음을 경고하였다. 실제 그는 전직 아르헨티나 해군 장교인 아돌포 실링고(Adolfo Scilingo)를 스페인 여행 중이었을 때 체포하였다. 실링고는 아르헨티나의 군부가 수감자들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수장시킨 사실을 처음으로 자백했으며(Tizon 1999), 동시에 아르헨티나의 '추악한 전쟁' 기간 중에 자행된 인권침해로 해외에서 재판을 받은 최초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2005년에 재판을 받은 실링고는 총 64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가르손은 아르헨티나 독재정부의 인권탄압이 나치의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스페인은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다. 1998년에는 아르헨티나 군부가 비밀리에 가지고 있던 스위스 은행 계좌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가르손의 동료 판사인 가르시아-카스테욘은 피노체트 독재시절 칠레에서 사라진 스페인 국적자 100여 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특히 군부통치 시절 남미 각국 정보기관의 공동 작전인 콘도르 작전(Operación Condor)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웃나라에서 실종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Tizon 1999)

콘도르 작전은 권위주의 시절 각국 정보기관의 비밀 협조 조직으로서 타국으로 도망간 반체제 인사를 잡아들여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잡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살해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일어났음은 물론이다. 콘도르 작전에는 칠레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이 참가하였고 피노체트가 이를 주도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주변국까지 쫓아가 보복하였다. 1974년 아르헨티나에 망명 중이던 프랏(Prat)장군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차량 폭발로 살해되었으며, 1976년에는 레텔리에르(Orlando Letelier) 전 주미 칠레대사가 미국에서 암살되었다. 이와 같은 작전은 칠레 정보부가 주도했지만 현지 공권력의 비호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콘도르 작전의 실체에 대해 세상은 궁금해하고 있었다.[3)]

3) 1998년 초, 가르시아-카스테욘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스페인 간 사법정보 교환협정(1990)에 의거 콘도르작전(operation condor)'에 대한 비밀파일을 FBI에 요청했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사례에 대한 조사에는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 스페인 국적 피해자가 10명 미만이었지만 스페인계 후손과 가족을 포함하여 600명 이상으로 늘었고 칠레의 경우 초기의 7명이 100여명으로 늘어났다. (Rothenberg 2002, 930)

다른 한편,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후안 가르세스(Juan Garcés) 검사는 1996년에 피노체트를 스페인 법원에 기소하였다. 그의 노력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지만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칠레 군부의 암살 작전인 '죽음의 암살단(Caravan of Death)'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축적하여 후일 가르손의 기소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가르시아-카스테욘은 레텔리에르 암살 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칠레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마누엘 콘트레라스(Manuel Contreras) 전 칠레정보국장(Dirección de Inteligencia Nacional, DINA)도 면담했다. 콘트레라스는 칠레정부의 고위층이 자신의 작전을 승인했다면서 진짜 DINA의 수장을 칠레재판정에 세울 생각이라면 "자신을 세우지 말았어야 했다"(진짜 수장은 자신이 아니라 피노체트라는 뜻)고 주장했다.(Tizon 1999) 콘트레라스는 자신에 대한 사면을 염두에 두고 피노체트와 DINA와의 관계, 그리고 각종 테러를 그가 직접 사주한 정황 등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Wilson 1999, 975-6) 가르시아-카스테욘은 이 정도 증거면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노체트를 기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피노체트가 1990년 정권을 물려주기 전에 자신에 대한 면책권을 만들어 칠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칠레에서 피노체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그가 해외여행 중일 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피노체트에게 사면을 부여한 칠레의 국내법은 스페인에서는 적용되지 않

그러나 그가 미국에서 넘겨받은 자료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CIA쪽의 자료는 거의 받지 못했다. 사실 1970년대 중반 칠레 정보국(DINA)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했던 곳은 CIA였는데 정작 CIA는 콘도르작전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Tizon 1999)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는다. 그 이유는 피노체트의 범죄는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범죄이므로 칠레의 사면법이 있더라도 스페인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석 2005, 9)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피노체트가 디스크 치료를 위해 유럽의 병원을 물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프랑스는 피노체트의 치료를 거부했지만 영국은 비자를 발급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인의 좌파 정당은 그를 '콘도르 작전'의 몸통으로 지목하여 고발하였다. 또한 희생자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피노체트를 집단살해, 테러 고문범으로 지목하고 체포를 요청하였다. (Rothenberg 202, 936-7)

피노체트를 잡기 위해 가르시아-카스테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슈퍼판사'인 발타사르 가르손(Baltasar Garzón)이 적임자였다. 또한 콘도르 작전에 아르헨티나가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손은 이미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었다. 사건의 단일화를 위해 가르시아-카스테욘은 본 사건을 가르손에게 넘겼다. 이렇게 하여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케이스는 모두 가르손 판사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가르손 판사는 10월 16일에 피노체트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영국-스페인 간의 조약에 의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였다. 영장은 인터폴이 런던 지방법원에 전달하였고, 법원은 즉시 피노체트에 대한 임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런던의 개인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던 피노체트는 결국 체포되었다. 가르손은 일주일 뒤에 고문, 납치 및 살인 교사 등의 혐의를 자세히 밝힌 두 번째 영장을 발부하였다. 특히 두 번째 영장에는 범죄인 인도를 염두에 두고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Rothenberg 202, 934-6)[4]

4) 부패한 정치인, 마약 조직 두목, 불법무기 거래상 등을 용기있게 법정에 세운 것으로 유명한 가르손 판사는 스페인에서 "슈퍼판사"로 통한다. 그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법치주의에 집착하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노체트 사건으로 인해 일약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하였다. 가르손 판사는 젊었을 때부터 개성 있는 인물이었다. 신학교 졸업을 하루 앞둔 날 지금은 부인이 된 한 여학생 숙소의 창문 밖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며 구애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 후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로스쿨을 간신이 마칠 수 있었다. 가르손은 32살에 마약과 위폐, 테러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페인의 특수고등법원(Audiencia Nacional) 판사가 되어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가 마약조직 소탕에 성과를 보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Ⅲ.2. 스페인 내부의 갈등구조

스페인 법은 범죄인에 대한 궐석 재판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노체트가 없는 상황에서 본 건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단 담당 판사의 철저한 조사에 힘입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인권침해 사건의 초국가적인 해법에 대한 법리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다음 장 참조) 시민사회도 적극 참여하여 시민행동(acción popular)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활동을 벌였다. (Rothenberg 2002,930) 특히 스페인의 사회주의자 호세 보렐은 “피노체트 사건은 유럽이 인권을 위해 싸울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다. 우리가 피노체트 체포를 포기하면 앞으로 밀로셰비치 같은 인물을 과연 재판정에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Tizon 1999)

반면 스페인 행정부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였다. 1998년 스페인의 검찰총장(Fiscal Jefe)은 아르헨티나의 범죄가 스페인 영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스페인 국민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당시 관련국들이 비상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집단살해(genocide)죄를

이는 등 스타로 부상하자 당시 스페인 사회당 펠리페 곤잘레스 수상은 정치권에 그를 영입하여 마약전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에 염증을 느낀 가르손은 다시 특수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대테러전과 국가안보와 관련한 분야까지 영역을 넓힌 그는 바스크 테러리스트의 수사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한 ‘암살단’의 존재와 테러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바스크 분리주의운동을 향한 스페인 정부의 ‘추악한 전쟁’의 실체를 밝혔다. 그 결과 전 내무장관 호세 바리오누에보(José Barrionuevo)가 기소되었고, 이는 곤잘레스 14년 집권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르손이 바스크 분리주의를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바스크의 지역 신문을 폐간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Rothenberg 2002, 926) 가르손은 스페인에서 대중적 인기도 누리지만, 항상 협박과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어디를 가던 삼엄한 경호를 받아야 한다. 그의 행보를 보면 특정 정파나 이념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조인임을 알 수 있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나, 1998년 5월과 9월에 대법원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사례가 스페인에게 관할권이 있음을 최종 판결하였다. (Rothenberg 202, 934) 그렇다면 스페인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이견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스페인은 과거 청산 및 독재자 처리에 있어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다. 1970년대의 원활한 민주화 이행을 위해 프랑코 지배 기간 동안 악행을 저지른 정부 관료들을 스페인 정부가 사면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르손의 행보를 가장 강하게 비판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과거 프랑코 시대에 공직에 있었던 인사들이었다. 또한 일부 스페인 사업가들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내정(즉, 과거 청산 작업)에 스페인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피노체트를 처벌하려다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민주화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남미 사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던 것이다. 프랑코 시대 때 장관을 지냈으며 칠레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던 사업가, 마르틴 비야(Martin Billa)는 가르손의 행동이 불공평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관들은 세상에 종말이 와도 정의를 따져야 되고 또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Tizon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유력 신문, ‘엘 문도(El Mundo)'와 ‘엘 파이스(El Paí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0퍼센트가 피노체트를 스페인에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스페인 국민들이 자국의 사법체제에 대해 느끼는 자긍심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Tizon 1999)

Ⅲ.3. 영국법원의 심리

피노체트 체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전직 국가원수가 자신의 영토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타국에서 체포되어 제3국으로의 송환을 기다리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선례가 없기 때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노체트 자신이 직접 살해하는 등 물리적으로 관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체포된 사실은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Rothenberg 2002, 940)

피노체트가 체포되자 그의 변호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영국법에 따르면 인도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체포하여 인도할 수 있다. 즉 영국법이 "범죄인이 제3국에서의 범죄에 대해 모국(이 경우 스페인이 아닌 칠레)이 요청할 경우이거나 영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3국인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조항을 들어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송환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Extradition Act, 1989, c.33, at 2(2) in Rothenberg 2002, 938) 또한 국가원수로서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직 외교관이나 국가원수는 타국에서 면책특권을 인정받으며 영국법도 퇴직 외교관(국가원수 포함)이 공무수행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경우에도 자국법에 의해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Rothenberg 2002, 939) 이에 칠레정부는 피노체트가 종신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의 특명전권대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영국정부는 피노체트가 주장한 면책특권은 "영국을 방문하는 공직자나 신임장을 제정한 외교관에 한한다"하고 응수하였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심리는 피노체트가 면책특권을 갖는가 아닌가에 집중되었다. (앞의 글, 940)

제1차 심리를 담당한 영국 고등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한 변호사들의 항소에 관련법을 검토하고 두 건의 체포영장을 심의하였다. 첫 번째 영장은 제3국 영토에서 벌어진 제3국인 살해사건은 영국법이 명시한 범죄인 인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기각하였고, 인도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닌가가 중요했던 두 번째 영장도 피노체트가 전직 국가원수이므로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또한 기각하였다. 고등법원은 피노체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영국 검찰이 스페인 사법부를 대신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스페인 인도 여부에 관한 심리는 계속 진행되었다. 일단 피노체트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나 런던 근교의 요양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출국금지를 명령하였다. (앞의 글, 939-40)

2차 심리는 영국의 대법원 격인 상원에서 열렸다. 사건이 정치색이 짙은 상원으로 넘어가자 국내외적인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대처 전 수상은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 당시 영국의 우방이었던 칠레의 대통령을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비난을 쏟아내었다. 보수 언론인 찰스 크라우트해머(Charles Krauthammer)는 피노체트의 체포가 "위선과 자의적인 정의(selective justice)를 한층 가중시키는 일이며 유럽좌파들이 스스로에게 위안거리를 주기 위해 저지른 시도"라고 비난했다.(WP 1998년 10월23일, Tizon(1999)에서 재인용) 또 다른 피노체트 지지자인 윌리엄 F. 버클리는 "피델 카스트로의 깃발을 휘두르며 칠레를 더럽힌 아옌데 대통령을 축출한 군지도자에 대한 악의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NYP 1998년 10월23일, Tizon(1999)에서 재인용)

11월 25일 상원은 3대 2의 결정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노체트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음을 결정하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노체트가 국가원수로서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보편적 관할의 대상인 테러, 고문, 집단살해 등의 인권침해 범죄가 국가원수라 할지라도 면책대상이냐는 것이었다. 즉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도 국가원수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냐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경우 면책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그 근거는 국제적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상원의원 중의 한 명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피노체트의 변호인단이 심리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상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다시 소집하였다. (Rothenberg 2002, 941)

그런 가운데 12월 1일, 피노체트를 더욱 곤란에 빠트리는 일이 발생한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보다 인권보호가 더 우선한다면서 가르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극비문서를 더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직 CIA관료 한 명은 "벌레가 들어있는 통"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다고 불평했다. 전직 CIA 관료들은 공개된 문서 때문에 1970년대 초 닉슨대통령의 대 칠레 정책을 총괄했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비롯해 고위층 인사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했다. (NYT 1998년 12월2일, Tizon 1999에서 재인용) 특히 1976년, 레텔리에르의 차량을 폭파시킨 DINA 요원이 워싱턴에 잠입한 당시 CIA 국장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곤란해 질 수 있었다.[5)]

1999년 3월 24일, 상원은 최종판결을 통해 6 대 1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피노체트에게 면책특권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상원은 가르손이 기소한 32개의 죄목 중에서 대부분인 29개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국법상 1988년 이후에 벌어진 고문 범죄에 대해서만 타국에 인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즉, 일면 피노체트에게 그리 불리하지 않은 결정도 내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초에 법원은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피노체트가 스페인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Rothenberg 2002, 942-3)

이에 칠레 정부는 10월 중순에 영국 정부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피노체트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2000년 1월, 피노체트는 7시간에 걸쳐 정밀 건강진단을 받았다. 검사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뇌손상이 있어 더 이상 심리나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칠레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와 같은 소문에 대해 유럽 주변국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벨기에는 영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사실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들은 가르손을 지지했으며 각각 피노체트를 기소하는 등 나름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상당수 유럽인들이 피노체트 사건을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5) 피노체트 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대응은 거의 없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내는 정도였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변호사협회는 "2차 대전 후 뉘렌베르그나 도쿄 재판 때부터 국가원수는 임기 중의 범죄행위로 인해 심판 받았으며, 면책특권은 국가와 관련되어 전용되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1998년 10월 30일, 정영숙(2001, 205)에서 재인용)

Asiatic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대안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가르손의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단행되자 유럽의회도 바로 지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피노체트의 칠레 송환을 결정하였다. 마침내 3월 3일 피노체트는 칠레 정부가 보낸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였고 도착하자마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하늘로 던져버리고 영접 나온 군 간부들을 치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Ⅳ. 보편적 관할권과 그 효과

최초에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가해자들을 기소하면서 스페인 법원이 언급한 피해자는 스페인 국민에 국한되었었다. 즉 수동적 속인주의(또는 피해자국적원칙, jurisdiction of passive personality)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일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병천 2005, 116)

그러나 그 이후 스페인 국적자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추가되기 시작하자 보편적 관할권의 범주로 넘어가게 되었다. (Wilson 1999, 951) 이는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범 세계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범법행위의 국제적 공동제재 방안의 일면으로 어떤 국가든 그러한 범법자를 수중에 두고 있는 국가는 그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소병천 2005, 116-7)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의 범주에 드는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우선 UN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1996년 발표한 '평화와 인류에 대한 죄에 관한 법전안'(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에 따르면 집단살해, 반인륜적 범죄, UN 및 그 직원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등이 보편적 관할의 범주 안에 든다. (Kamminga 2001, 944) 집단살해의 경우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집단살해 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은 범인에 대한 관할을 집단살해가 벌어진 국가 또는 국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제 사법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3국의 법원에 대한 관할권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대개 관할권은 국가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보스니아 전범 재판의 경우 독일 법원은 보스니아에서 행해진 회교도에 대한 집단살해 혐의로 보스니아-세르비아인을 법정에 세운 바 있으나, 호주나 스위스 법원의 경우 국내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포기한 선례가 있다. (앞의 글, 944)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륜적 범죄는 민간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자행된 체계적인 살인, 말살(extermination), 노예화, 추방, 투옥, 고문, 성폭행, 박해, 강제이주, 인종차별을 의미한다. (ICC, Kamminga 2001, 946에서 재인용) 본 규정은 제3국이 갖는 보편적 관할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국제관습법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 법원은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본 사건에 있어 스페인 법원은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 대한 근거를 국내법에서 찾아내었는데, 법원기본법 23항4조에는 “스페인 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집단학살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는 스페인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Wilson 1999, 950) 이에 대한 가르손의 입장은 더욱 더 진보적이다.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국가에서 법의 심판을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 모국의 국내법이나 사법체계가 국제적인 사안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제3국의 법원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othenberg 2002, 928-9) 따라서 스페인은 자국 영토 밖에서 자행된 외국인의 집단살해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소할 권리를 인정하게 되어 보편적 관할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인권 탄압 범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제한요인은 무엇인가? 카밍가(Kamminga, 2001)는 첫째, 각국의 미흡한 법 제도, 둘째, 보편적 관할을 행사할 기관의 부재, 셋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째, 국가원수로서 누리는 면책특권, 넷째, 이미 사면된 범죄 행위, 다섯째, 증거확보의 어려움, 여섯째, 국제적인 감독기능의 부재 등을 들었다.[6] 그러나 가르손 판사는 '피노체트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제한요인을 대부분 해결하였다. 법 제도적인 측면인 첫째, 두 번째 요인은 스페인 사법부의 진보적인 자세 덕분에 문제가 될 수 없었고, 다섯 번째 요인은 본인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여섯째 요인은 후일 ICC가 설립되면서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았다. 가장 어려우면서 쟁점이 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장애인 면책특권과 국내적으로 사면된 범죄의 경우 '피노체트 사건'을 비롯한 몇 번의 경험을 국제사회가 하면서 더 이상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다. 특히 ICC 설립 이후에 관할범죄인 집단살해 죄, 인도에 관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별국가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사면에 대해 국제사회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면책특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식 재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전직 국가원수가 제3국 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인권확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서 평가할 만하다. (김영석 2005, 16-7)

또한 보편적 관할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가르손이 강하게 항변한다. 그는 "암살이나 고문 등과 같은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권력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거리의 거지가 저지른 범죄와 같은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Morrissey 2001, 69) 대신 이번 사건은 다른 방향에서 현실 정치적인 차원의 쟁점을 새롭게 잉태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 보도록 한다.

Ⅳ.1. 법과 정치, 사법부와 행정부

이 사건은 영국, 스페인 그리고 칠레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각국

6) 이와 같은 제한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amminga (2001, 951-63)을 참조.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사법부의 단죄 의지에 맞서 정치적 이익과 국제정치적 역할관계를 고려해야하는 정치권이 대항한 것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세 나라의 정치권은 모두 본국인 칠레로의 송환을 강력히 원하였다.

초기에 엄정한 법적용을 시사했던 영국 노동당 정부는 결국 피노체트를 풀어주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보수당의 강력한 반발과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 당시 피노체트가 영국을 지원한 사실이 결국 이와 같은 결정에 이른 배경이다.

칠레의 경우 여전히 피노체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해 대부분 본국송환을 원했다. 본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세력은 피노체트의 추종세력인 우파이다. 당연히 빠른 송환을 주장했던 이들은 지도자가 타국에서 수난을 당하긴 했지만 국내적으로 우파의 지지세력 결집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반면 극좌파는 칠레에서 과거 청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라도 독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된 정파는 집권 콘세르타시온 중도좌파이다. 이들은 심정적으로는 피노체트의 단죄를 원했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의 처리를 원했다. 1998년 인술사(José Miguel Insulza) 외무장관은 코피 아난(Kofi Annan) UN 사무총장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칠레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본 사건의 관할권을 갖도록 도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과거 학자이며 사회당원으로서 피노체트의 집권시절 15년간의 해외망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술사 장관은 이 편지에서 피노체트에 대한 사면 해제를 시사함과 동시에 칠레가 자율적인 과거청산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Insulza, 1998) 무엇보다도 칠레의 중도좌파는 건강이 좋지 않은 피노체트가 해외에서 객사하여 우익의 순교자로 재탄생하게 되면 국내적인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우파가 결속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길 것이라 예상했던 1999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는 대선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었다. 1차 투표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 라고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스(중도좌파연합)와 라빈(우파)과의 표 차이는 0.4%에 불과하였고, 2차 투표에서 라고스는 간신히 승리하였다.

다른 한편 스페인 행정부는 가르손의 기소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만약 스페인에서 피노체트 재판이 진행될 경우 과거 프랑코 시대의 인권유린과 이에 대한 불완전한 청산이 다시금 부각되어,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피노체트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자 스페인 검찰은 강력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 논리중의 하나는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한 스페인의 법원기본법이 1985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범죄(1973-198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스페인 법원은 이 법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의 원칙은 스페인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문제제기를 기각하였다. (Wilson 1999, 951-2)

물론 칠레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스페인 정부는 영국의 석방 결정이 내려진 10일 후인 2000년 1월 21일, 만약 영국 정부가 피노체트를 인도하지 않고 석방시키기로 결정하더라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르손 판사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성명이었다. (한국일보 2000년 1월 12일, 정영숙(2001, 306)에서 재인용) 결정적으로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자하는 행정부와 법적인 정의를 확립하고자하는 사법부 간에 충돌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물론 스페인의 시민사회는 지지를 보냈다. NGO들은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하였고, 스페인의 한 주간지는 스페인의 미래가 가르손 판사에 달려있다고 칭송항 바 있다.

Ⅳ.2. '정의확립' 개념의 정의

이번 사건은 국제화된 인권사안의 해결에 있어 보편적 관할권의 확립을 통해 '정의확립'을 이룩하려는 단계에서 법적인 판결과 실제적 집행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노체트를 칠레에 돌려보낸 결정이 국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한 현실주의를 반영한 결과라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면, 앞으로의 법 집행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출현할 것이다. 법정에 세우고 상징적인 판결이 난 후 실제 집행은 현실적인 여건을 보아 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해법이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법과 외교가 변증법적 합일점을 찾은 것일까? 아니면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원리가 적용된 것인가? 그렇다면 엄정한 법 집행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정의확립'은 국제적인 해결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것인가?

물론 정의확립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카발로 사례는 제3국 간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완전한 정의가 확립된 사례이다. 가르손은 아르헨티나의 전직 군 장교인 카발로(Ricardo Miguel Cavallo)를 스페인으로 송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카발로는 멕시코에서 위장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1999년 가르손 판사가 집단살해와 고문, 테러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자 (기소종결법이 유효했던) 아르헨티나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멕시코 경찰에 의해 칸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 이듬해 가르손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3년간의 심리를 벌인 끝에 멕시코 대법원은 스페인과 멕시코간 체결된 범죄인 인도협정이 적법하며 멕시코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죄를 제외한 집단살해와 테러 혐의로 카발로의 유죄를 인정하며 송환을 명령하였다. 2003년 11월에 6월에 스페인 법원으로 인도된 카발로는 2006년 1월에 기소되어 2007년 말로 예정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12월에 스페인 법원은 카발로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을 결정하고 아르헨티나로 인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5년에 기소종결법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카발로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페인 법원은 아르헨티나의 인도요청을 심의하여 송환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Trial Watch, www.trial-ch.org)

그러나 카발로와 피노체트는 엄연히 다르다. 전자가 반인륜적 범죄를 실제 저지른 실무자(immediate material author)이라면, 후자는 이를 사주하고 명령을 내린 배후인물(intellectual and moral author)인데, 가르손에 따르면 일단 모든 가해자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더 책임이 큰 배후인물을 처리해야 정의확립이 가능하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다고 보았다.(Rothenberg 2002, 947-8) 그러나 실제 나타난 결과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물론 두 사건의 인과관계는 없지만, 아르헨티나 사례의 실무자는 처벌을 받고 있고, 칠레 사례의 배후인물은 처벌 받지 않았다. 즉, 법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높은 배후인물의 경우 판결과 집행 사이의 괴리 현상은 불가피한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의확립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피노체트는 오로지 죽음으로서 단죄되었는가?

Ⅳ.3. 보편적 관할권 행사와 민주주의

노톤(John Norton)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칠레와 같은 국가는 과거의 인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과거청산을 해버리면 민주화 자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르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7] (Norton, Morrissey(2001, 69)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독재자 스스로 민주세력에 정권을 이양할 의향이 있다면 이와 같은 단죄는 민주화를 늦추거나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신변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내줄 독재자는 없다. 그러므로 가르손의 노력이 피노체트 개인에 대한 법적인 단죄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현재나 미래의 독재자에게 '소중한' 학습 효과가 될 수 있어 피노체트가 했던 식의 보호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보면 보편적 관할의 국내 법원 행사가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답을 찾기 어려운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과거청산에 있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여러 나라에 확산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노체트를 기소한 국가는 스페인

7) 궐석인 빈 라덴을 기소한 사건은 그가 노벨상 또는 정치적 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국내적인 비판도 있다. 피노체트 자신도 가르손이 대단한 야심가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La Tercera, 2003) 그러나 가르손 개인에 대한 비판은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이외에도 많이 있다. 각국에는 가르손과 같은 역할을 했던 판사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의 쉬프린(Leopoldo Schiffrin)과 카발로(Gabriel Cavallo), 칠레의 구즈만(Juan Guzmán), 벨기에의 반더메어치(Vandermeersch), 파라과이의 페르난데즈(José Fernández)가 그들이다. 이들은 또한 인권 변호사, 희생자 본인 및 가족, 사회운동가 등 시민사회 전반으로부터 사례 수집과 법률 조언 등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Roht-Arriaza, Wilson(2006, 532-3)에서 재인용) 예를 들면 스페인의 가르세스는 가르손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일찌감치 길을 닦아놓은 인물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르헨티나의 에스키벨(Adolfo Pérez Esquivel)의 존재는 과거청산에 대한 시민적 열망을 결집시키는 구심체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국제법을 국내법원에 적용시키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소송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문가의 법지식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접목시켰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법원은 실종자 가족이 군부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시신을 찾아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Wilson 2006, 534) '법의 혁신(legal innovation)'이라고 부를만한 이들의 노력은 사법부를 통해 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한 개가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Ⅴ. 결론

피노체트를 스페인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가르손의 노력은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와 인권 문제의 국제적인 해결, 또는 국제적인 사안의 국내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를 남겼다. 이를 분석한 본 논문은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와 효과 그리고 한계를 과거청산에 있어 법적인 해결의 한계, 정의확립개념의 재정의 필요성, 보편적 관할권과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피노체트가 본국으로 송환된 지 3년 뒤 국제형사재판소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가 설립되어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서 발족하였다. 당시 그로스만(Grossman)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다면 이와 같은 전범이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국제적인 단죄가 좀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1998년에 유엔에서 합의가 있었지만 재판소의 설립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르손 식의 처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laudio Grossman, Morrissey, 2001, 69에서 재인용)

현재 설립된 ICC의 규정에 따르면 "2002년 이후에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일방 당사국이나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소추관이 제소하는 경우에 범죄발생지국이나 범죄인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범죄발생지국이나 범죄인 국적국이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실행할 수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즉 일방 당사국이 제소하지 않거나 범죄발생지국이나 범죄인 국적국이 ICC 회원국이 아닌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가 있어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02년 이전의 범죄도 관할권이 없다. 그러므로 여전히 가르손이 지향하는 확대된 의미의 보편적 관할권은 ICC 시스템 하에서도 구현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ICC의 노력과는 별개로 제2, 제3의 가르손이 출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2007년 5월 현재 101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41개국이 비준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미국, 중국, 인도 등은 회원국이 아닌 사실도 ICC를 통한 해결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가르손의 노력은 세계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라는 선례를 남겼고,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과거 청산작업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메넴시대의 과거 청산에 있어 한계를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축적된 가르손의 노력은 2000년대에 들어 단행된 키르츠네르의 본격적인 청산작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고 많은 국가의 법조인들이 그의 뒤를 따르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고 있다.

물론 보다 직접적인 효과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칠레의 사례이다. 칠레의 과거청산 작업은 런던에서의 '피노체트 사건'이 아니었다면 상상하기 힘들었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 피노체트가 칠레로 송환된 이후, 라고스 정부는 피노체트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를 단행한다. 칠레에 도착했을 때 피노체트는 200개가 넘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었다. 마침내 2001년 1월 29일 구즈만 판사가 피노체트에게 가택 연금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면책특권의 박탈에 성공하였고 피노체트 재판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법정에 설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노체트는 건강상의 이유로 매번 법원의 소환을 피했다. 피노체트는 2006년 12월에 사망하여 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실패했다.

Abstract

From 1998 through 2000, General Augusto Pinochet, the former dictator of Chilean authoritarian government, was detained in London pending possible extradition to Spain to face charges of terrorism, genocide, torture, and the other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For the first time, the domestic court of one nation was successfully used to enforc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principles against a former head of state for crimes committed in a different country.

However, while judge Baltazar Garzón has received significant international attention for his aggressive prosecution of Pinochet, the impact of his contributions - both intellectual and practical - to human rights have been largely ignored. This paper outlines the Spanish case, the extradition order, and the subsequent legal and political debates assess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The combined use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to bring a former dictator to justice brings of several debates which are discussed in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concluding part of the paper: conflict between law and politics, definition of justice in human rights issues, and relations between universal jurisdiction and democracy.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Keywords: Universal Jurisdiction, Chile, Spain, Pinochet, Garzón/ 보편적 관할권, 칠레, 스페인, 피노체트, 가르손

논문투고일자: 2007. 05. 11
심사완료일자: 2007. 05. 19
게재확정일자: 2007. 05. 25

참고문헌

강경희(2006),「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자유권적 인권: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9, No. 3호, pp.127-157.

곽재성(1998),「인권의 시각으로 본 칠레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9집, pp.17-49.

곽재성(2006),「피노체트의 죽음이 남긴 교훈」, 한겨레신문 2006년 12월 13일자.

김영석(2005),「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에 대한 사면(amnesty)의 국제법적 효력」, 서울국제법연구, Vol. 12, No. 2, pp.1-19.

박병수(2002),「민주주의 이행과 인권: 아르헨티나와 칠레」,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5, No. 2, pp.73-100.

소병천(2005), □□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송기도(2000),「피노체트 사태 독자 시각 필요」, 동아일보, 2000년 3월 10일자.

정영숙(2001),「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 - 피노체트 심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집, Vol. 27, No. 3, pp.298-313.

제임스 월랜(2001),「피노체트와의 인터뷰」, 역사와 기억팀 인터넷 자료실,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http://past.snu.ac.kr

BBC(2005) "Profile: Judge Baltasar Garzón," BBC, 26 Sep, 2005.

Evans, Rebecca(2006), "Pinochet in London - Pinochet in Chile: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in Human Rights Policy," *Human Rights Quarterly*, 28, pp.207-244.

Insulza, José Miguel(1998), "Carta de Canciller chileno, José Miguel Insulza, al Secretario General de la ONU, Sr. Kofi Annan" in Rojas Aravena, Francisco and Carolina Stefoni(eds., 2001), *El "caso Pinochet," visiones hemisféricas de el detención en Londres*, FLACSO-Chile, pp.263-268.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Kamminga, Menno(2001), “Lessons Learned from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in Respect of Gross Human Rights Offenses,” *Human Rights Quarterly*, 23, pp.940-974.

Morrissey, Siobhan(2001), “Universal Prosecutor” ABA Journal, March 2001, pp.66-70.

Rojas, Paz, et al.(1998), *Tarda pero llega: Pinochet ante la Justicia Española*, Santiago de Chile: LOM Ediciones.

Rothenberg, Daniel(2002), ““Let Justice Judge”: An Interview with Judge Baltasar Garzón and Analysis of His Ideas”, *Human Rights Quarterly*, 24, pp.924-973.

Tizon, Alvaro(1999), “The Judge & the Dictator,” *Consortiumnews.com*, 13 Jan, 1999.

Trial Watch, http://www.trial-ch.org

Wilson, Richard(2006), “Book Reviews: The Pinochet Effect: Transnational Justice in the Age of Human Rights by Naomi Rohl-Arriaza(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Human Rights Quarterly*, 28, pp.528-533.

_____(1999), “Prosecuting Pinochet: International Crimes in Spanish Domestic Law,” *Human Rights Quarterly*, 21, pp.927-979.

_____ “La entrevista más franca de Augusto Pinochet,” La Tercera, Sep 14, 2003.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